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발 신 무상의료운동본부 (김재현 국장 02-522-7284), 민주노총 (우문숙 정책국장 02-774-4551), 참여연대 (이지은 간사 02-723-0666)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(서채완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(희우 활동가)
제 목 [보도협조요청]긴급기자브리핑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
날 짜 2019. 12. 3. (총 2 쪽)

보도협조요청

[긴급기자브리핑]

팩트체크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

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

일시 장소 : 2019. 12. 04.(수) 오전 10시,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

1.

취지와 목적

-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,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(이하 개인정보3법안)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,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,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,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음.
-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,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.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

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옴.

-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.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,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음.
-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‘해커톤’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.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음.
-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,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 ◆
◆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함.

2. 개요

- 제목 : [긴급기자브리핑] “데이터 3법,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?”

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
- 일시 장소 : 2019. 12. 4(수) 오전10시-11시/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
- 주최 : 건강과 대안, 무상의료운동본부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,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
- 주요 순서

참가자 소개 / 인사말

-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
-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
- 질의 응답

- 문의 :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(이지은 간사 02-723-0666/이경민 간사 02-723-5056)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